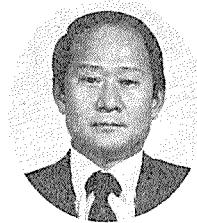


原子力法改正의 意義



黃 慶 瀨
(科學技術處 原子力局長)

I. 序 言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開發과 이에 따라 발생되는 放射線에 의한 災害防止와 公共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1958년 3월 法律 第483號로 제정된 原子力法은 우리나라 原子力 安全規制行政의 根幹이 되어 왔으며, 그 條文의 대부분이 原子力事業의 部門別 認許可 및 安全規制 關聯條項으로서 原子力의 利用助長 기능보다는 放射能 災害로 부터 公共의 安全과 國民의 生命保護側面을 더욱 嚴格히 규정하여 安全性確保를 原子力事業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原子力發電을 비롯하여 原子力의 產業的·工業的·農學的·醫學的 利用領域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原子力關聯技術과 週邊產業技術이 발전됨에 따라 規制爲主의 法體系로서는 점증하는 제반 사회적·經濟적·기술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을뿐 아니라 이의 利用領域을 계속 확대하고 技術開發의 加速화와 原子力事業의 經濟성을 提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要請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原子力 安全性確保에 支障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過度한 規制條項을 완화하고 새로운 技術變動에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전지향적인 내용을 신설하는 등 原子力技術開發의 促進, 經濟性 提高 및 安全性確保를 상호 보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부로 法律 第3850號로 原子力法이 改正, 公布 되었다. 本稿에서는

이번 개정된 原子力法中 原子力產業의 利用助長을 위한 부문을 중심으로 發展行政論의 시점에서 그 개정 의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主要 改正內容

우선 개정된 主要內容을 요약해 보면 原子力委員會의 國務總理所屬으로의 格上, 原子力發電所 건설에 대한 認許可 節次의 簡素化, 原子力發電所에 대한 사업자의 自體檢查制度의 도입, 國際規制物資의 計量管理規定 신설, 放射性同位元素 등의 使用規制의 완화,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의 설치, 放射性廢棄物 발생자의 費用負擔原則의 신설, 그리고 行政聽聞制度의 도입과 行政刑罰의 行政秩序罰로의 완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그 細部內容을 설명하면,

첫째, 原子力委員會를 科學技術處所屬에서 國務總理所屬으로 격상하고 副總理를 副總理로, 委員은 次官級에서 長官級으로 하고 위원수를 5人 이상 7人 이하로, 當然職委員으로 科學技術處長官, 動力資源部長官 및 韓國電力公社社長으로 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任命하도록 改正되었다.

둘째, 原子力發電所의 認許可 및 檢查制度의 簡素化 事項으로 發電用原子爐의 建設許可를 받은 자는 工事着手前에 그 설계 및 工事方法을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工事進行에 관계없이 그와 관련된 자료만을 工事完了前까

지 제출토록 규정하여 原電建設 認許可制度를 建設許可, 설계 및 공사방법 신고, 運營許可 등 3 단계에서 建設許可와 運營許可의 2 단계로 완화하였고, 原電建設 및 운영에 따른 政府檢查의 일부를事業者의 自體檢查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째, 發電用原子爐設置者 등은 國際規制物資의 計量管理規程을 정하여 國際規制物資의 使用開始前에 科學技術處長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종사자도 同規程을 준수토록 의무화 하였다.

네째, 放射性同位元素 등의 使用規制의 緩和措置로서 放射線發生裝置를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一定規模以下의 경우에는 신고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同位元素使用者 등은 放射線取扱監督者免許 등을 받은 자 중에서 放射線安全管理責任者를 선임하여야 하던 것을 許可事業者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두되, 申告使用者의 경우에는 非免許者라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放射線安全管理責任者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정부는 同基金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基金造成의 主要財源은 放射性廢棄物發生者 負擔原則에 依據 原子力關係事業者가 부담토록 하였으나, 그 負擔金額은 發電用原子爐運營者에 대하여는 當該 原子爐 運轉으로 생산되는 電力量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料率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發電用原子爐運營者 이외의 原子力關係事業者에 대하여는 放射性廢棄物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였다.

한편, 기금의 용도는 放射性廢棄物管理에 관한 研究開發, 放射性廢棄物의 처리, 처분 및 關聯施設의 건설·운영, 그리고 放射性廢棄物과 관련되는 附帶事業으로 한정하였으며 기금은 科學技術處長官이 운용·관리토록 하고 放射性廢棄物의 永久處分은 韓國에너지研究所가 전담토록 하였다.

여섯째, 行政聽聞制度를 도입하여 許可取消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處分相對方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過怠料條項을 신설하여 免許證의 記載事項變更申告등 輕微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從前의 行政刑罰인 罰金刑을 行政秩序罰인 過怠料로 완화하였으며 이밖에 原子力關係事業者の 缺格事由를 종전에는 原子力法을 포함하여 他法律에 의하여 禁錮以上의 刑의 선고를 받고 그 刑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中에 있는 자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것을 原子力法을 위반하여前述

한 刑事處罰을 받은자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原子力法의 主要改正內容을 살펴 보았다.

III. 原子力法改正의 意義

前述 한 改正內容을 중심으로 原子力政策決定機能의 강화, 原子力技術自立의 촉진, 原子力事業의 國際的 信賴性 提高, 그리고 原子力安全規制行政의 漸進的 發展이라는 측면에서 改正意義를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1. 原子力政策決定機能의 強化

우리나라 原子力政策決定의 유일한 法的 機構인 原子力委員會는 原子力의 이용·개발 및 안전에 관한 主要政策 및 사업에 대한 審議·議決機能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原子力事業의 主務部處인 科學技術處 所屬의 위원회로서 原子力關係公務員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 오고 있다. 今番 同委員會가 國務總理所屬으로 格上되고 위원이 長官級으로 少數精銳化된 것은 이제 原子力委員會가 일개 部處次元의 原子力政策을 審議·議決하는 것에서 脱離하여 汎部處의 國家次元에서 國家原子力政策이樹立·決定되어야 한다는 時代의 要請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는 原子力事業이 國家經濟 및 產業發展에 미치는 波及效果와 國際政治의 特殊性을 고려한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현재의 科學技術處所屬의 위원회로서는 他部處間의 異見調整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인 副總理로 하여금 汎部處의 차원에서 部處間 異見調整을 圓滑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원회에 결정된 정책은 國家次元에서 一貫性 있게 추진하고 少數精銳의 長官級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國際原子力政策變化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므로 原子力委員會의 政策決定過程의 效率性과 결정된 정책의 實效性을 制度的으로 확보한 것이라 하겠다.

2. 原子力技術自立의 促進

'70년대 2차례에 걸친 石油波動 以後 天然能源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安定的 供給이 國家經濟發展의 最優先 課題로 대두되어 석유 대체 에너지로서 原子力を 선택하여 현재의 10기의 原電이稼動 또는 建設中에 있다.

그러나 막대한 建設費가 소요되는 原電建設은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外國技術에 의존하고 있어 原電建設의 技術自立이 중요한 國家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原子力發電의 核心技術은 核先進國이 核非擴散이라는 명분 하에 核後進國으로의 技術移轉을 기피하고 있으며 原電建設의 核心技術

을 독점하여 核後進國로의 原電建設 수출시에는 技術料라는 명분하에 막대한 經濟的 實利를 추구하고 있어 核後進國의 原電建設은 菲연적으로 경제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려므로 原電建設의 經濟性을 提高하고 國家에너지의 安定의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核心技術을 자립화하는 수 밖에 없다.

한편, 核心技術開發에는 高級專門人力의 養成確保・研究施設의 擴充 등, 막대한 研究開發投資費가 소요됨으로 이의 安定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번 原子力法改正에서 정부가 放射性廃棄物管理基金을 설치하여 原子力研究開發事業의 일부의 영역이긴 하지만 原子力關係事業者가 放射性廃棄物處理・處分 등의 研究・開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原子力技術自立을 촉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3. 原子力事業의 國際的 信賴性提高

前述한 바와 같이 原子力技術은 고도의 전문성과 國際政治的 特殊性 때문에 항상 核先進國으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核武器非擴散條約(N.P.T)을 비롯한 각종 國際協定・協約加盟國으로서 실제적으로 이들 國際約束을 충실히 遵守履行하고 있으나 국내법이 이에 대한 明文規定이 없어 核先進國 및 國際原子力機構(IAEA)로부터 國內安全保障措置(SAFEGUARDS)의 履行要求가 증대하고 있는 등 核開發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國際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다. 더욱기 '75년 우리나라가 N.P.T條約에 가입하고 韓・佛・IAEA間 安全措置協定이 체결되면서 國內 原子力關聯施設에 대한 IAEA가 安全措置審查權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더욱 國內法의 保障措置의 履行壓力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 原子力法改正에서 國際規制物資의 計量管理規程을 신설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대외적으로는 核武器非擴散條約의 基本精神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闡明함으로써 國際的 信賴性을 提高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한 國際機構 및 核先進國과의 技術協力を 촉진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대내적으로 核物質 등의 國内在庫 및 利用現況을 효과적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서 核物質의 國家綜合安全保障措置體制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4. 原子力行政의 漸進的 發展

원子力行政은 원子力產業促進機能과 放射能災害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재산을 보호하는 安全性確保機能을 여하히 조화・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정부의 原子力 安全規制의 기본적인 수단은 原子力關係施設에 대한 認許可 및 檢查制度라 볼 수 있다. 이번 法改正에서 原電建設・運營에 대한 認許可制度를 3 단계에서 2 단계로 대폭 완화하여 막대한 建設費가 소요되는 原電建設의 工期遲延要素를 사전에 排除토록 제도화 하고 原子力發電所에 대한 政府檢查의 일부를 사업자 自體檢查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自體檢查技術向上 및 安全性確保能力을 배양시키고, 정부와 사업자간의 役割分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政府規制檢查의 效率性을 提高토록함을 비롯하여 放射線의 產業의 이용의 급증과 免許所持者의 부족 등 사회적 諸般 여건을 감안하여 放射性同位元素使用者 및 同使用施設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보완하고, 行政聽聞制度를 도입하여 許可取消 등 行政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處分相對方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한 것은 産業發展의 促進과 行政의 民主化 俱現의 측면에도 進一步 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從前의 罰金型인 行政刑罰을 經微한 사항의 違反時에는 過怠料로 處分토록 완화하고, 原子力關係事業者의 缺格事由도 原子力法을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선고를 받고 그 刑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한정시켜 國민의 基本權을 不必要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과감히 補完함으로써 原子力安全規制行政發展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IV. 結語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된 原子力法의 主要內容을 중심으로 改正意義를 發展行政論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물론 개정된 내용중에는 發展行政과逆行되는 조항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는 原子力安全確保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며 法改正의 전체적인 흐름은 規制爲主의 行政에서 發展志向의 行政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諸般 规定이 새로운 技術進步와 社會變動에 能動的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과감히 發展志向의으로 检討・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原子力技術發展이 法的・制度的인不合理 때문에 저해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법은 항상 原子力產業發展의 기틀이 되어 주고 이를 助長시키는 原動力이 될 수 있도록 繼續 補完發展되고 또한 合理的으로 運營되어야 할 것이다.